서울지역본부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LH에서는 마이홈센터(☏1600-1004, 내선번호 2번→3번) 및 서울지역본부 매입임대 상담센터(☏02-2015-1040)를 통해 모집공고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은 신청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세부 내용을 숙지하신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5.09.11.(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모집호수) 총 518호, (주택관리번호) 2025-980118

(모집일정) \*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 9.11(목)

신청(PC·모바일): 9.22(월)~9.24(수)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9.26(금) 10:00

서류제출: 9.26(금)~9.30(화)

자격검증: 10.1(수)~12.5(금)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12.8(월) 17:00 이후

계약체결(순번 도래시): 별도 안내

입주: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등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복신청 불가)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가전제품 등 비치)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 비치되어 있거나 비치될 예정입니다. (비치된 가전 및 가구의 처분은 불가하며 분실·멸실·파손 시 LH에 통보하고 원상복구 또는

원상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주택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단위) 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고,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성별분리) ‘공급주택목록’의 ‘성별용도 구분’에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남성전용 주택에 여성 신청 시 부적격, 여성전용 주택에 남성 신청 시 부적격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2.5~3배수를 모집합니다. \* 지역, 주택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유형 선택) 19~39세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청년 유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단, 일부 주택(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모 무주택 배점 신청자(1~3순위) 및 2순위 신청자는 동일 세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세대원에 부모를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개요]

[공급대상 주택 : 총 518호]

•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공고문 페이지에 주택사진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 및 청소년쉼터 퇴소자 수시 우선공급으로 인해 지역별 공급물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주택물량이 감소하거나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임대기간

내용: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재계약(2년 단위) 4회 가능(최장 10년 거주)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2년 단위) 5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20년 거주)

구분: 임대조건

내용:

시중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1순위: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00만원)

2·3순위: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200만원)

구분: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내용: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증액 전환이율: 연 7%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 시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 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 아파트 등은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비해 관리비(세대 개별 사용분 제외)가 두배

이상 높을 수 있으며, 상주관리인 유무에 따라 관리비가 높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 기간이 차감됩니다.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2025.09.11.)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09.12. ~ 2006.09.11. 출생자)인 사람

② 대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입주순위]

1순위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1995.09.12. 이후 출생)의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도 신청 가능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차상위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1995.09.12. 이후 출생)의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그리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그리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소득·자산 기준]

1순위

소득기준: 수급자 등 자격 확인

자산기준: 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

소득기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209,721원, (2인) 6,024,703원, (3인) 7,626,973원

자산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37,000,000원 이하, 자동차 38,030,000원 이하

3순위

소득기준: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317,797원

자산기준: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54,000,000원 이하, 자동차 38,030,000원 이하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 Ⅰ-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신청 시 부모 인적사항 필수 기입)

[소득 · 자산 산정방법]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 소득

산정방법: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구분: 부동산

산정방법: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구분: 자동차

산정방법: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 합산금액

구분: 총자산 – 금융자산

산정방법: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 퇴직금, 연금보험 등

구분: 총자산 – 기타자산

산정방법: 공장기계, 선박, 주택사업 임차보증금, 임목, 어업권, 회원권 등

구분: 부채

산정방법: 금융권 대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등

구분: 자동차(평가기준)

산정방법: 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아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함. 동점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평가항목 ① 수급자 등 여부 (1순위 자격 검증 시에만 적용 / 시설에서 급여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 배점 3점

나. 차상위계층: 배점 2점

평가항목 ② 부모 무주택 여부 (신청 시 검증대상 부모 명확 기입)

가. 부모 무주택: 배점 2점

평가항목 ③ 소득조건(소득기준 50% 이하 여부) (미혼자녀의 경우, 본인·부모 각각 50% 이하)

가. 본인 또는 부모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 배점 1점

· 예시 금액: (1인) 2,951,706원, (2인) 3,281,487원

평가항목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회차 (신청자 명의 통장 인정회차 기준)

가. 24회 이상: 배점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배점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배점 1점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공급단계: 청약신청

일정: 9.22(월) 10:00 ~ 9.24(수) 16:00

내용:

청년 매입임대는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으로 신청 가능

LH청약플러스→청약→임대주택→청약신청→매입임대 선택

신청 전 자격·소득·자산 등 본인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조회 가능(위임장 지참 시 가족 소득조회 가능)

접속 폭주 대비 마감 임박 전 신청 권장

마감일 9.24(수) 오후 4시까지 접수 완료(저장기준)

공급단계: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일정: 9.26(금) 10:00

내용: • LH청약플러스→청약→청약결과 확인→서류제출대상자 명단 확인

공급단계: 대상자 서류제출

일정: 9.26(금) ~ 9.30(화)

내용: •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제출(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 제외) • 제출처: (06100)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청년매입임대 담당자 앞) • 9.30.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등기우편만 가능)

공급단계: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일정: 개별 안내(예비자 순번 발표 전)

내용: • 무주택·소득·자산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 조회 • 제출서류 누락·상이 시 소명 요구 가능 • 기한 내 미소명 또는 이의 없음 간주 시 예비입주자 선정 제외

공급단계: 예비자 순번 발표

일정: 12.8(월) 17:00 이후

내용: • LH청약플러스→청약→청약결과확인→당첨/낙찰자조회 또는 ARS(1661-7700)로 확인

공급단계: 계약체결

일정: 개별 안내

내용: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주택열람 관련 계약체결 안내문 발송 • 주택개방은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입주 완료

[서류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안내]

공고일(‘25.09.11)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5.09.26.(금) 10:00]

신청자 본인이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PC)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청약 → (왼쪽 상단 메뉴)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오른쪽 상단 메뉴바)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서류제출 기간 : 2025.09.26.(금) ~ 2025.09.30.(화)]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 접수]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신청서류 일체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처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청년 매입임대 담당자” 앞

제출기간 마감일(‘25.09.30.)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미제출 및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내용: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내용: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발급처: (표기 없음)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아래 순위별 검증대상 전원이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 (1순위·3순위) 본인 또는 본인과 부모 서명(아래 참조) / 부모 무주택 배점 신청 또는 부모 관련 서류 제출 시 본인과 부모 서명, 그 외 본인 서명 / (2순위) 본인과 부모 서명

발급처: 신청자 작성[양식 첨부]

[입주자격 확인서류(19~39세 청년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으로 서류 제출)]

대상자: 청년(19세~39세)

제출서류: 없음(단, 본인 나이 확인 필요)

발급처: (표기 없음)

대상자: 대학생(19세~39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출서류: (재학생) 재학증명서 /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 증빙 + 각서(첨부양식) / (휴학생) 휴학증명서 + 각서(첨부양식)

발급처: 해당 교육기관(각서: 신청자 작성[양식 첨부])

대상자: 취업준비생(19세~39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출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 이력으로 발급) / (졸업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 (중퇴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 (졸업예정자·졸업유예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 (채용공고 합격자) 합격자 증빙서류 / 근로활동확인서(일자 확인)

발급처: 건강보험공단(1577-1000), 해당 교육기관, 신청자 작성[양식 첨부]

[1순위 및 수급자 배점 자격요건 확인 서류(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대상자: 수급자 가구

제출서류: 본인 또는 부모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대상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제출서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대상자: 차상위계층 가구

제출서류: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장애인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기타 제출서류(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내용: [신청자의 등본상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부모 이혼 시에 한하여 제출]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제출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초본

내용: [이혼한 부모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모두 미등재된 경우] 신청자, 부모 모두의 초본 제출 / (주의) 과거 주소변동(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장애인 가구

내용: 본인 또는 부모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내용: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제출 / 가입은행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발급 가능 /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2025.09.11 /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가입: 청약통장 전환신청일이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종합청약저축으로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해당 배점으로 청약 신청 가능

발급처: 가입은행, 청약홈

제출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금융정보 제공·제공 사실 통지 미동의 포함)

내용: [2~3순위만 제출] \* 1순위는 불필요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 14세 미만 가구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필요

발급처: 신청자 작성[양식 첨부]

제출서류: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내용: [2~3순위만 제출] \* 1순위는 불필요 / 공적자료로 확인 불가능한 차입보증금, 본임금,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며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발급처: 신청자 작성[양식 첨부]

[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관련항목: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유의사항: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신청자격·소득 등 입력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신청

인터넷 청약은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 결정 → 누락·착오·허위 입력 시 당첨 취소 등 불이익 발생 가능(모든 책임 신청자 본인)

신청일자별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 기준) 필요, 접속자 폭주 등 시스템 장애 대비해 마감 임박 전 신청 권장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 변경 가능(정정·삭제), 마감시간 경과 후에는 변경 불가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 유의, 정상적으로 접수된 내용 반드시 확인

관련항목: 입주자 선정

유의사항: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만 신청 가능, 입주 시까지 자격 유지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따름

외국인은 신청 불가

미성년자는 계약 시 법정대리인 동의·인감증명서·지정대리인 필요

다음에 해당하면 부모 범위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 제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

· 부모의 주소가 행정정보 상으로 분리(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가 다르거나 가족·혼인관계 해소, 생계유지 곤란·복잡 등)되어 부모로 보기 어려운 경우(‘사실상 부모가 아닌 자’)

· 주민등록 변경(전출·전입 등)이 잦아 부모와의 생계·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 군 복무·학업 등으로 실거주가 불가한 경우

관련항목: 주택개방

유의사항: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는 청약기간 및 계약체결 전 LH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 여건에 맞게 주택 개방일정 진행(주택내역 또는 공지로 안내 예정)

관련항목: 동호 지정·계약체결

유의사항: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안내문 발송, 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확정

지정 가능한 순번이 도래하지 않으면 해지 주택 발생 등 지역본부 여건에 따라 순차 계약 가능

계약순번 도래 시 계약 포기(불참·미계약 등)하면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전자계약 시 일정·유의사항은 전자계약 체결 안내문 준수

관련항목: 입주관련(기금대출 등)

유의사항: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 및 증빙 제출(은행이 매입임대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 불요, 세부사항은 은행과 사전 상담)

타 임대주택(국민임대·전세임대 등)은 입주 전 임대사업자에 명도

계약·입주 이후라도 주택 소유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 해지 및 퇴거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입주 완료(일부 주택은 주택정기기간이 계약체결 1개월 후부터 가능)

관련항목: 임대조건

유의사항: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자산검증 제외(예비신혼부부 제외)

첨부 주택내역의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약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관련항목: 재계약·자격 등

유의사항: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충족 시 재계약 가능

기본 계약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최장 10년).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는 재계약 5회(최장 20년) 가능

소득·자산·주택 보유 등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재계약 요건 충족해야 재계약 가능

관계법령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인상 가능

청년 매입임대 입주 중인 사람이나 타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하여 입주예정인 경우 본 공고 신청·계약 불가(중복입주 제한)

병역의무 이행(군 복무 등)으로 계약·입주 불가 시 증빙 제출하면 계약체결 유보 및 입주권 유지 가능(유보 기간 2년, 1년 단위 2회 연장 가능)

병역·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지연 시 연체료·위약금 없음(사전 신청·승인 필요, 최대 1년 내 입주)

재계약 불가 사유: 재계약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님, 세대주가 주택 소유, 소득·자산 요건 초과 등(예비신혼부부는 혼인신고 전까지 재계약 불가)

관련항목: 기타사항

유의사항: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 비치되어 있거나 비치될 예정입니다.

지역별, 주택별 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분실, 파손, 훼손, 멸실된 가전제품 등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비치된 가전제품 등 분실 발생 시 임차인은 LH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동(棟) 단위 매입 주택에는 지역편의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으나 임대목적물 아님

LH는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협조 의무

관련항목: 임대료 납부·기타(추가 유의)

유의사항:

임대료는 자동이체 방식 권장, 모바일·이메일 고지서 수령 및 자동이체·이벤트 서비스 신청 가능(LH청약플러스)

거주 중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로 가구원이 증가한 경우 더 넓은 주택으로 전환형 매입임대주택(세대원수 전환형) 신청 가능(동일 시·군·구, 세부기준 충족 필요)

분양권·입주권 보유 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공고문 ‘주택 소유’ 기준 확인

계약 이후 분양권 등 취득 시 주택 외 입주계약 유지 가능하나 소유자는 임대주택 거주 불가

임대주택 및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원형변경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납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신청 가능 횟수 등 제한 적용

매입임대주택은 임차권 양도·전대·전대용역 등이 금지, 위반 시 관계 법령에 의해 민·형사상 처벌 가능

임차권·양도·전대 알선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조치

주택형·세대감소 가능성 및 개별주택 특성은 계약 전 반드시 확인

기타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 하단 첨부 Q&A 등 참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계약·입주 지연 발생 가능(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

입주청소는 입주자가 직접 실시, 조망일 전 키 불출 불가

기계식주차장 운영 시 추가 비용 발생 가능, 주차장 부족 시 추가 발생 가능

주거복지지사·지역본부 여건에 따라 일정·내용 변경 가능